

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

(남부골목시장, 까치산시장, 송화벽화시장, 방신전통시장)

의안 번호	2022-26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년 3월 일

제 출 자: 강 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- 관내 4개 전통시장 조합 및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(2022. 4. 15. 字 3건, 2022. 6. 30. 字 1건) 기존 수탁자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여,
-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통해 시장 이용 고객과 지역 주민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,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고객 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 현황

○ 고객지원센터

연번	시장명	위 치	현 황	연면적	준공연월	비고
1	남부골목	등촌로5길 62-4 (화곡4동)	1층-공중화장실 2층-고객쉼터, 사무실 3층-상인교육장	213.56㎡ (64.72평)	09년 11월	
2	까치산	강서로12길 14 (화곡8동)	1층-공중화장실 2층-고객쉼터, 사무실 3층-상인교육장	302.23㎡ (91.24평)	12년 2월	
3	송화벽화	강서로 263-29 (발산1동)	1층-주차관리실 2층-공중화장실, 고객쉼터, 사무실 3층-상인교육장	151.73㎡ (45.90평)	12년 2월	

○ 고객주차장

연번	시장명	위 치	현 황		대지면적	준공연월
			주차면수	금지		
1	남부골목	곰달래로55길 4, 곰달래로251	24대	2	750㎡ (227평)	증설 21년 12월 최초 12년 02월
2	까치산	강서로12길 14	19대 (기계식 주차타워 16면)	2	186.18㎡ (56평)	12년 02월
3	송화벽화	강서로 263-29	24대	2	661.98㎡ (200평)	12년 02월
4	방 신	방화동 578-8	10대(노상)	2	100㎡ (30평)	12년 07월 (거주자우선주차해제)

나. 필요성

-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은 전통시장 방문고객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고 책임경영과 안전사고 예방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인조직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바,
-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을 상인조직에서 직접 관리토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

다. 주요 위탁내용

- 추진근거 : [붙임 1 참조]
- 위탁기간 : 5년
 - 남부골목·까치산·송화벽화 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(2022. 4. 16. ~ 2027. 4. 15.)
 - 방신전통시장 고객주차장(노상)(2022. 7. 1. ~ 2027. 6. 30.)
- 소요예산 : 해당사항 없음
- 위탁사무 내용 :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등
- 수탁자 선정 : ‘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’ 심사 선정(2022. 3. 10.) [붙임 2 참조]

라. 추진일정

- 2022. 03월 :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
- 2022. 03월 :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
- 2022. 03월 :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의회 제출
- 2022. 04월 :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[방신전통시장 고객주차장(노상)은 6월]

3. 참고자료

가. 추진근거 관계법령(붙임 1)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의 2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4조 및 제13조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」 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-20호) 제22조

나.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(붙임 2)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 3)

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의 2**제17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**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·수익허가 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.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4조**제4조(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)**

- ②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상인조직등”이라 한다)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상인조직

3.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13조**제13조(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)**

-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회수는 한 차례에 한하며,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.
-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.

4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」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-20호) 제22조

제22조(주차장 등 수익발생 위탁운영)

-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(공동판매장, 고객지원센터, 공동물류창고, 태양광발전 등) 수익발생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.

-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-
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의결서

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의결함.

의결사항

위탁시설	수탁기관	심사점수	의결사항
남부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	서울화곡동남부시장 사업협동조합	83 점	위탁기관 선정 결정 여부 - (적격) / 부적격
까치산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	까치산시장상점가진흥 사업협동조합	82.2 점	위탁기관 선정 결정 여부 - (적격) / 부적격
송화벽화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	송화벽화시장상점가진흥 사업협동조합	86.2 점	위탁기관 선정 결정 여부 - (적격) / 부적격
방신전통시장 고객주차장(노상)	방신전통시장 상인회	80.6 점	위탁기관 선정 결정 여부 - (적격) / 부적격

※ 최고·최저점 제외 평균점수 기재(신청기관 모두 70점 미만시 재선정)

2022. 3. 10.

심사위원회

위원장	이 덕해	(서명)
위원	조 영호	(서명)
위원	조 은영	(서명)
위원	박 성근	(서명)
위원	원 선화	(서명)
위원	김 승라	(서명)
위원	김 건	(서명)

첨부: 점수표

**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운영
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**비용발생 요인** :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

2. **미첨부 근거 규정** :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제9조제3항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)

3. **미첨부 사유** :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
상인조직에서 부담하여 별도의 지원 예산이 없음

4. **작성자** : 미래경제국 지역경제과 (담당: 행정7급 장남택 / 2600-6277)